



장윤호 매니저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필수

미국 세관에 검증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제출해야 함  
Miami 세관에 제출된 증빙 서류 중 한글이 사용된 ERP 캡처 화면을 증빙 서류로 제시하  
았기에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작업 실시한 후 제출함

**Miami 세관 제출 자료**

**Boston 세관 제출 자료**

- 결정 내용(CBP Form 29)
- CBP Form 280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해 Boston 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한국산 인정)을 받음

검증결과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임

## 향후 업체 대응 방안

### 이의신청(Protest) 준비

- 미 Miami 세관의 "Negative(한국산 불인정)" 회신(CBP Form 290)에 대해 이의제기 (Protest)를 준비 중에 있음

### FTA 원산지 시스템 구축

- 내부 ERP 시스템의 "Tracking Number"를 통한 원산지 관리를 넘어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 및 내부 IT 구성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체계를 구축 할 예정임

## 원산지관리사로

# 블루오션을 향해하다!

원산지관리사 첫번째 합격수기,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장윤호 매니저의  
「원산지관리사 취업성공기」를 들어본다.

## 원산지관리사에 도전!

저는 지방소재 대학의 무역학과에 입학하여 서울지역 대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무역전문기양사업(이하 GTEP)이라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 대학교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실무적인 무역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FTA를 통해 진라남도라는 "무역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 바로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흔히 무역학과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관세사가 있지만, 국제무역사라는 자격만으로 무언기를 하기에에는 역부족이며, 관세사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FTA 전문 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즐거웠던 준비기간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수강을 통해 원산지관리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관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협정별 · 상품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하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FTA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원산지관리사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FTA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원산지관리를 공부하다보니 원산지관리사 각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점차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생각에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원산지관리사로 취업성공!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의 FTA활동 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수강하여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게 되었고, 전라남도 기업들의 FTA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할 수 있다면 꿈꾸고 있던 "전라남도 무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유로 높은 가산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전라남도 FTA 활용 증대에 온 힘을...

현재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FTA활동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센터에 파견된 관세사님들과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다니면서, 전라남도의 상황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FTA활동도를 높여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라남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무역이 강한 전라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 FTA시대를 향해하기 위한 나침반, 원산지관리사

벌써 원산지관리사로서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동안 원산지관리사로서 각종 FTA관련 교육·설명회 기획, 전라남도 기업들의 BOM 부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작성,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 준비 등을 도움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의 FTA 활용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FTA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을 증대시키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넛크래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FTA를 활용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로서 전라남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꿈을 키우고 있지만, 원산지관리사로서의 업무영역이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오니 여러분께서도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꿈을 키워가는 것이 어떨까요?

#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2012년 12월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으로 지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이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과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서비스업이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①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
- ②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③ 근로자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④ 근로자수 100명 이하의 그밖의 업종 등

※ 다만, 부동산업, 일반우송, 주점업, 무도우송,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4번에 걸쳐 각각 27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3명까지 지원하며,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4명을 한도로 지원된다. 본 사업은 고용창출지원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사업 실시 및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여부 확인, 사업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준비, 지원금 신청, 지도·점검 대응 등을 꼼꼼이 챙겨 전문인력 확보와 정부 지원금 혜택이라는 1석2조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담당 게시판 고용창출 지원 사업 시행공고 및 세부 시행 지침을 참고하거나 관련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해외임가공 감면대상 제외비용, 물품 취급 수수료 등 거래제한비용의 FTA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김덕연 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 해외임가공품의 FTA활용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의 감면이란,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특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를 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이에 면제해주는 제도들을 통틀어 관세의 감면제도가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란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업체가 외국의 임가공 업체에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원제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입하는 때에 수출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해외임가공품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로 첫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둘째, 제조·가공 및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서 제조·가공 및 수리 후 수입된 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단,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범위는 수출된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해외임가공을 위해 발생하는 임가공료와 양복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원재료와는 별개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재수입 물품에 대한 100% 감면의 의미는 아니며, 관세법 101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가공료, 물품 취급 수수료, 양복운임 등 거래제한비용까지 세액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FTA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외임가공업체(수탁가공업체)가 우리나라

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며, 임가공물품이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해외임가공품에 대한 감면보다 더 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임가공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출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물론 임가공료와 양복 운임·보험료에 대한 세액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원재료라 활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요량, 진량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지만 FTA를 활용할 개 되면 역내산을 입증할 비교적 간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히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수월하다. 단, 반드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임가공 물품 등 감면	FTA 특혜세율
적용 대상 물품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HS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제한 없음
특혜 범위	수출된 원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100% 면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 0%~100%
제출 서류	임가공계약서, 수출원재료와 수입물품 HS 10단위가 일치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	원산지증명서 (EU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적용시점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소급 가능)
적용범위(국가)	어느 국가나 적용 가능	FTA 체결국에 한정

